

검 토 보 고 서

2025. 3. 21.(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9명



복 지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출자 : 차해영 의원 외 9명
- 제출일 : 2025. 3. 10.
- 회부일 : 2025. 3. 11. (의안번호 : 25-18)

2. 제안이유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및 내용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2. 25.~3. 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①을 삭제하며,
- 안 제4조에서는 제1항에 관계기관 및 지원항목을 구체적인 조항과 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종합검토의견

최근 들어 점차 잔인해지고 범행동기조차 없는 범죄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늘어나고 2014. 12. 30일자로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 또한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년)’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각 기관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중임.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살인·강도·성폭력·방화·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이 주요 대상이며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최은영 (8810)	김희선 (88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제1항 신설 항목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일부 수정안에 따른 비용 및 예산상 변동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이정화
연 락 처	02-3153-8803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우리구가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현황

단 체 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별관 102호
연 락 처	- 전 화 : 02-707-1295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swcvc.kcva.or.kr/ - 이사장 : 김갑식
설 립 목 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 - 강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단 체 연 혁	- 2004.12.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 2006.11. 법무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3. 우리구 지원현황

연도 별	보조사업명	보조액(천원)	정산반납액
2024	범죄피해자 지원	50,000	0
2023	범죄피해자 지원	45,000	0
2022	범죄피해자 지원	45,000	0

4. 2024년 지원실적 (98건, 50,000천원)

사업유형	지원유형	내역	건수	지원금액 (천원)
지원사업	생계비지원	생계비	4	2,400
		주거이전비	4	3,490
	의료비지원	치료비	25	20,637
	사례지원	법률지원	42	1,000
		상담지원	2	400
	기 타	프로그램운영	6	5,074
		장례지원	1	5,000
홍보사업	신문광고 홍보		1	330
	소식지 홍보		1	1,000
	기타 홍보물		2	669
운영사업	인건비		10	10,000
계			98	50,000

5 . 2025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긴급생계비, 취업훈련비, 주거이전비 등)
- 지원대상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등
- 지원금액 : 50,000천원(구비)

